

# 통일공대 선거시행세칙

2023. 09. 14.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세칙은 '통일공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통일공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이하 선거)의 민주적이며 공정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권한)

선거에 있어 학생회칙을 가장 우선시하며, 학생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세칙을 따른다. 또한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통일공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된다.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4조 (선거권)

1항 회칙에 의한 학생회원으로 한다.

2항 8차 학기(건축학 전공은 10차) 이상 재학, 산학인턴, 해외교류중인 회원은 투표자만 유권자에 포함한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투표율 계산 시 총 유권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시 포함해야 한다.)

3항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는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 (피선거권)

1항 회칙에 의한 본 회원으로 4차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2항 학생회칙에 명시된 대로 일정 인원 이상 본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단, 4개 학과 및 학부 각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다수의 후보자에 대해 복수 추천이 가능하고, 한 후보에 대한 복수 추천은 불가하다.

### 제6조 (후보자등록)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마감일 18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① 재학 증명서
- ② 제5조 2항에 의한 선관위의 도장이 찍힌 추천서 또는 선관위가 인정한 전자추천 명부 (추천서에는 회원의 성명, 학번, 학과 및 학부, 서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11조의 2 6항에 의한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명단과 재적 증명서
- ④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 ⑤ 후보자 사진(후보자 공고용 선관위 이메일로 제출)

#### 제7조 (입후보자 심사)

1항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제5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한다. 자격 미달 시 등록을 거부한다.

2항 입후보자가 제6조의 구비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한다.

#### 제8조 (사퇴규정)

1항 선관위원, 통일공대 학생회 집행위원회, 학과 및 학부 정(부)학생회장, 학년 대표, 집행부, 통일공대 동아리 대표자 중 선거 입후보, 대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선거운동본부원은 추천 시작 3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항 선관위원은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다.

3항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서와 사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입후보자 최종 등록 : 룰미팅)

1항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으로 하며,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항 룰미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 ①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 ② 세칙 검토
- ③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 논의

3항 선관위는 룰미팅 결과에 대해 24시간 이내 공개한다.

## 제3장 선거

#### 제10조 (선거일)

1항 선거는 통일공대 학생회칙 제40조에 따른다.

2항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제11조 (선거운동)

1항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2항 추천기간 중 특정 단체를 지칭하지 않는 범위 내의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 제11조의 2 (선거운동본부)

1항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관위의 감독하에 후보의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2항 선본은 후보자와 선본 구성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세 분석, 정책 공약, 입장 등을 생산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3항 선본은 정(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으로 구성된다.

4항 선본장은 선관위와의 소통에 있어 선본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본과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5항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6항 각 선본의 선본 구성원의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명단은 선본 구성원의 이름, 학과 및 학부, 학번, 선본 내에서의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7항 최초 선본 구성원 등록은 제6조 ③을 통해서 하며, 이후부터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본장이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항 선본 구성원의 자격이 없거나 이미 다른 선본의 선본 구성원인 사람을 신고하거나 선본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신고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9항 선본은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0항 선본은 본 세칙을 준수,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 제12조 (선거운동 기간)

1항 선거운동 기간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2항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 제13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선관위원, 통일공대 학생회 집행위원회, 학과 및 학부 정(부)학생회장, 학년 대표, 집행부, 통일공대 동아리 대표자

2항 재적 중이 아닌 자

3항 회칙에 의한 회원이 아닌 자

#### 제14조 (선거 유세)

유세는 개인 유세와 합동 유세로 나누며 룰미팅 때 정한다.

#### 제15조 (개인 유세)

1항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 연설회, 옥외 연설회와 간담회로 국한한다.

2항 간담회의 형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하며 시행 3일 전까지 선관위에 계획을 제출하고 각 선분의 동의를 얻어 형식을 인준한다.

3항 선관위 심의필이 없는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쳐 선관위의 명의를 넣은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4항 1,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 제16조 (합동 유세)

1항 선관위는 1회 이상의 합동유세를 개최한다. (단, 단선의 경우 룰미팅에서 합동 유세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항 합동유세는 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따른다.

3항 합동유세의 순서는 후보등록 시 추천하여 정한다.

4항 공고된 유세 시간 3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항 한 후보당 유세 시간은 공연, 지지유세, 본 유세를 포함 50분으로 한다. (단, 유세 교체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50분을 넘어서면 주의 1회를, 또 다시 5분이 지나면 경고 1회와 동시에 유세를 중단시킨다.

6항 각 후보자의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할 수 없다.

7항 각 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하는 형태의 유세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8항 이외의 합동유세 진행은 선관위원장이 책임진다.

9항 합동유세의 형식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각 선분과 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선거문화제와 결합하는 합동유세 등)

### 제4장 통일공대선거관리위원회

#### 제17조 (위상)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획책 및 세칙,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하는 선거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18조 (목적)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9조 (업무 및 권한)

1항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2항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항 회칙, 세칙, 규정 및 각 선본과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시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제20조 (구성)

1항 정(부)학생회장(궐위 또는 사퇴 시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권한대행)과 통일공대 소속 각 학과 및 학부 정(부)학생회장(궐위 또는 사퇴 시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권한대행)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은 각 학과 및 학부별로 하나만 갖는다. (단, 선관위원장과 부선관위원장은 각각의 의결권을 가진다.)

2항 선관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부선관위원장은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3항 필요시 선관위 산하 집행국 및 집행위원을 둔다.

4항 선관위원 해임 시 선관위원직을 위임 및 복직할 수 없으며, 대리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21조 (소집, 개최 및 의결)

1항 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항 선관위원 구성단위 과반수 출석 시 즉시 개최한다.

3항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은 선관위 구성단위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참관인

### 제22조 (투표 참관인)

1항 투표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2항 각 후보자는 각 투표소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 제23조 (자격)

1항 참관인은 선본원으로 하며, 대표 참관인은 선본장으로 한다.

2항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와 재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투표 2일째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 첫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적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 제24조 (이의제기)

1항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투표 진행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항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5조 (규제조건)

1항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2항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의 결정으로 선관위원장은 해당 참관인의 참관 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참관인은 투표 종료까지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해당 투표소에는 해당 선분의 다른 참관인을 들 수 없다.

3항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①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 ②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 ③ 이외의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 제26조 (기타사항)

1항 참관인들은 투표 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를 기각한다.

2항 참관인은 투표 시작 30분 전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을 운반한다. (단, 전자투표로 선거가 이루어질 때 참관인은 10분 전까지 선관위와 기표소 내부를 확인한다.)

3항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 제기할 경우 선관위원장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4항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제27조 (개표참관인)

1항 각 후보의 대표 참관인은 투표 2일째 12시까지 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개표 참관인은 개표 시작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3항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개표 참관인의 교체는 선관위원장의 허락하에 한다.)

## 제6장 이의제기

### 제28조 (이의제기)

1항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개표 참관인과 대표 참관인, 후보만이 할 수 있다.

2항 선거운동원은 대표 참관인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29조 (이의제기의 처리)

1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항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관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처리한다.

3항 선관위는 이의제기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항 이의제기 내용, 답변 내용은 답변한 직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장 징계

### 제30조 (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1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제32조 (징계의 통보)

1항 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2항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3항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경고 공고 게시를 12시간 이내에 경고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판에 게시한다. (선거 선전물량에 포함)

4항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①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공개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 판에 공개
- ② 경고 2회 - 경고일 하루(24시간) 유세금지(단, 합동유세는 가능)
- ③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 제8장 투표

### 제33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항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한다.

2항 투표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 한다. (단, 투표시간은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제34조 (투표용지, 투표구 및 투표소)

1항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한다.

2항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항 투표소에는 선관위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4항 전자투표로 진행할 시, 1항과 2항은 선관위가 인정한 전자투표로 대체한다.

### 제35조 (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① 학생증

② 국가인정 자격증

③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교학지원팀이나 과사무실에서 학번대조가 가능한 자, 참관인과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공인하는 자)

### 제36조 (투표절차)

1항 선거권자는 자신이 속한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2항 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① 선관위의 신분확인

② 선거인 명부 확인

③ 투표용지 배부

④ 투표

### 제37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1항 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2항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항 선거운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단, 징계의 종류는 선관위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 제38조 (투표함 이송)

1항 투표함은 투표 시작 30분 전에 선관위원과 각 대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에 자물쇠를 채우고 개표소로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이송한다.

### 제39조 (투표 마감 후 이송)

1항 투표가 끝난 후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이 투표함을 봉하고 참관인이 확인한 후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실로 이송한다.

2항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물품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재한 선거인 명부
- ② 남은 투표용지
- ③ 제반 기표 용품

제40조 (투표함의 보관)

1항 투표함은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항 선관위실이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제9장 개표

제41조 (개표시간) 개표는 투표 종료일 이내 선관위가 정한 시간에 한다.

제42조 (통칙)

1항 개표는 선관위원만이 할 수 있다.

2항 표의 유, 무효표 및 특정 후보의 득표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3항 전자투표 시 개표는 전산으로 한다.

제43조 (개표장)

1항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2항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3항 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제44조 (개표소)

1항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만 한다.

2항 개표는 선관위원과 개표 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3항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제45조 (개표절차)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① 투표인 수 공고
- ② 투표함 개봉
- ③ 개표
- ④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⑤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 ⑥ 현황판에 기재

#### 제46조 (기권 투표)

- 1항 기권 투표는 회원의 권리로서 투표 시 보장받아야 한다.
- 2항 투표용지(전자투표 및 종이투표)에는 반드시 기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권란을 만들어야 한다.
- 3항 기권표는 무효표와 구분된다.

#### 제47조 (무효투표)

- 1항 기계적 오류 또는 중복투표 등 선거 과정에서 생긴 무효표는 선관위가 표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 2항 표 처리에 대한 논의 결과는 논의가 끝난 후 즉시 공지한다.
- 3항 종이투표로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②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③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④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 4항 종이투표의 경우 제47조 3항 이외의 경우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선관위가 결정한다.
- 5항 종이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의 경우 무효표 수와 무효표로 처리된 이유, 무효표 사진 등을 공개한다.
- 6항 세척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의 문제가 발생한 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47조의 2 (연장투표) 전체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할 수 있다.

#### 제48조 (효력에 대한 삭제 조항)

## 제10장 당선

#### 제49조 (당선의 기준)

- 1항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항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차이는 무효표와 기권표의 합보다 커야하며, 전자투표 시 기계적 오류로 인하여 생긴 무효표는 기권표에 합산한다.
- 3항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는 전체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표해야 하며, 찬성과 반대의 득표 차는 기권표와 무효표의 합보다 커야 한다.

#### 제50조 (당선공고)

1항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2항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3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 위원 1/2 이상으로 한다.)

4항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 제11장 재투표 및 재선거

#### 제51조 (재선거)

1항 후보자 등록부터 시작하여 선거운동과 투표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2항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선거자체가 무효처리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3항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 제52조 (결선투표에 대한 삭제 조항)

#### 제53조 (재투표)

1항 시기와 시일을 연장하여 적당한 시기에 투표 행위만을 일컫는 말이다.

2항 재투표 일정은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하며,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3항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제12장 선거자금 공영제도 및 기탁금

#### 제54조 (목적)

선거가 학우들의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게 하며 좋은 정책을 가진 모든 학우에게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의 선거운동 비용 중 일부를 통일공대 학생회비에서 책정하는 방식이다.

#### 제55조 (기탁금)

선거자금 공영제도의 공정성 및 유용/남용을 막기 위하여 각 후보자는 기탁금 10만원을 위탁한다.

#### 제56조 (기탁금의 반환)

선관위는 기탁금을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단,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및 징계에 따라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기탁금은 통일공대 학생회비에 귀속한다.)

제57조 (선거자금 공영제도)

1항 공영자금은 ‘유권자 수 \* 100원’으로 하며 1만원 미만의 단위는 1만원으로 한다.

2항 선거자금 공영제도로 사용할 홍보용 인쇄물의 종류, 개수, 규격 등은 룰미팅에서 정하도록 한다.

3항 선거 관련 사용 내역이 아니라 판단될 시 해당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8조 (선거자금 공영제도의 조건)

선관위는 공영자금을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지급한다. (단,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징계에 따라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는 공영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장 부칙

제59조 (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제60조 (선거시행 세칙의 효력 발생)

본 시행세칙은 단학대회 의결을 받은 후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